경제혁신 희망의 새시대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도참고자료
http://www.motie.go.kr
15년 12월 24일(목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장 조익노(044-203-4830), 문경준 사무관(044-203-4833)

「기업활력법」상 대기업 적용대상을 특정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

□ 어제(12.23)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은 「기업활력법」 적용대상을 중소·중견기업으로 한정하되, **대기업의 경우 조선·철강·석유화학 업종에 한해서만 포함시키는 방안**을 제안하였음.

□ 산업부는 **대기업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**로 대기업의 악용방지를 위한 4중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**보완방안을 이미 제시**한 바 있음

○ 일본과 달리 동법은 **과잉공급 분야에 한정적으로 적용**되며,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**심의위원회**를 두었으며, **사전적·사후적 악용방지장치**를 마련함.

□ 「기업활력법」의 대기업 적용대상을 특정 업종에 한정하는 방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**법 제정의 취지를 크게 훼손**할 뿐만 아니라 **실효성도 반감**시키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음.

1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적 지원으로 WTO 규범에 배치될 우려

○ 법령에 사전적으로 특정 업종을 한정하여 지원할 경우 WTO 보조금 협정상 '특정성 요건'에 해당하여, **통상마찰이 발생**할 우려가 큼

2 조선·철강·석유화학 외에 다른 업종에도 과잉공급에 따른 사업재편 추진 필요성이 상당

○ 일본 「산업경쟁력강화법」상 기준을 국내 제조업에 적용한 결과*, 전체 과잉공급 품목 중 **조선·철강·석유화학 이외의 업종에 해당하는 품목이 약 65%**인 것으로 추정 (산업연구원)

* 산업연구원의 잠정적인 연구결과이며, 최종결과는 내년 1/4분기 중 나올 예정

○ 제조업 외에 건설업·서비스업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내수산업의 경우에도 **과당경쟁으로 한계기업이 급증**하는 상황

만 한계기업 비율('09→'14, %) : (건설업) 7.6→10.6, (운수업) 9.8→16.2

3 사전에 특정 업종을 법령에서 사업재편 대상업종으로 지정할 경우,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'불황업종'이라는 낙인효과 발생 우려

○ 현재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업황이 부진한 조선·철강·석유화학 업종이 미래에도 계속 과잉공급 업종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

○ 다른 업종도 현재는 공급과잉 상황은 아니나 중국 등 글로벌 상황 변화에 따라 공급과잉 등에 직면할 수 있음

4 기업 규모나 특정 업종에 한정해서 법 적용을 차별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려움

○ 「산업경쟁력강화법」을 통해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**기업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사업재편을 지원**하는 중

김혜련 / 홍보담당관 / 2015-12-24 11:16:37

참 고 **대기업의 악용 방지를 위한 4중장치**

1 동법은 **과잉공급 업종**에 한정 적용하여 **특혜소지 최소화**

○ ① **조직재편**과 ② **사업혁신 활동**을 통해 ③ **생산성을 향상**시킴과 동시에 ④ **업종 내 과잉공급을 해소**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

* 일본 「산업경쟁력강화법」의 과잉공급 기준을 국내 제조업에 적용한 결과, 주력산업의 약 30%만 과잉공급에 해당되므로 대기업의 일부만 동법 적용 전망

2 **엄격하고 투명한 절차**를 통해 대기업 특혜시비를 최소화하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유지

○ **민관합동 심의위원회**를 설치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재편계획에 한해서만 주무부처가 승인할 계획

*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인(민간위원장, 산업부 차관), 당연직 정부위원 3인,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 15인 이내 민간위원으로 구성

3 대기업 사업재편의 목적이 ① **경영권 승계**, ② **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** 또는 ③ **일감 몰아주기**인 경우,

○ **심의위원회** 또는 **주무부처 장관**이 해당 사업재편계획을 절대로 **승인할 수 없도록 「사전 방지규정」을 강화**

* 최근 삼성물산-제일모직 합병은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주된 목적이므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이 불가

4 또한, 대기업 악용가능성을 승인 이전에 배제하지 못한 경우 이를 **사후적으로 차단**할 수 있도록 **「사후 승인취소」 근거를 마련**

○ 대기업의 동 제도 악용 여부가 승인 이후에 판명될 경우 **승인을 취소**하고 **금전적 지원액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중과**할 예정